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세대원수별 면적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면적기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고시 제 호

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고시안

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호가목3)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자산기준,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초과비율에”를 “자산기준에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(3)을 삭제하고, 같은 목 (4) 및 (5)를 각각 (3) 및 (4)로 하며, 같은 목 (3)(종전의 (4)) 중 “(3)항까지”를 “(2)항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6.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5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등에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부과한다. 가. 적용대상 1) · 2) (생략) 3) <u>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규칙 별표4 제3호 바목에 따른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</u> 나. 부과방법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 다목의 소득 및 <u>자산 기준</u>, 세대원수별 <u>공급면적 초과비율에</u> 따른 할증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부과 다. 부과금액	6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가. ----- 1) · 2)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나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자산</u> <u>기준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다. -----

